

대구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1가단149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학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중 1/2지분1)에 관하여 2021.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6. 접수 제165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과 G은 2021.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 F은 G에게 4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G은 위 투자금을 변호사비용과 회사경비로 사용한다.

○ G은 10개월 내에 F에게 투자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 G은 F에게 담보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대구 북구 I 오피스텔 J호와 K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나. F과 G, 소외 회사, C은 2021.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F이 투자자, 소외 회사가 채무자, G과 C이 보증인으로 각 기명날인되어 있다.

○ F은 2021. 4. 26. 소외 회사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한다.

○ 소외 회사는 2022. 2. 25. F에게 투자이익금 40,000,000원과 투자원금 40,000,000원을 합한 8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F과 소외 회사, C의 촉탁에 따라 2021. 4. 26. 공증인가법무법인 L 증서 2021년 제159호로 ‘소외 회사는 2021. 4. 26. F의 투자금 80,000,000원을 인정하고, 2022. 2. 25.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며,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C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21. 4. 26. F에게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대구 북구 I 오피스텔 J호,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2. 1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채무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중 30,000,000원을 양수(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21. 12. 1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C은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6. 접수 제165829호로 2021. 12. 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G은 2021. 12. 16.경 F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F이 G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위하여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F과 G 사이의 유효한 투자약정에 기초한 것일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C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F이 상환받아야 할 투자원리금 중 G의 변제 후 남은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약정과 이 사건 공정증서는 투자약정이 아닌 F과 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채무자인 G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수익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G이 적법한 차용원리금의 액수를 초과한 50,000,000원을 F에게 변제함으로써 G의 F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또한 소멸하였으므로, 양도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1, 2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1)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2약정서에 '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 2약정은 'F이 G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와 C은 G과 연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정한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G이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 40,0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원금이 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면, F은 G으로부터 G이 40,000,000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금 40,000,000원에 수익금 40,000,000원을 더한 80,000,000원을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지급받는다. 이처럼 이 사건 제1약정은 원금을 일정기간 이후 반환할 것을 예정하면서 확정적 이익금지급의무와 원금보장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가깝고, 통상 투자자가 사업 실패의 위험(손실)을 일부 내지

전부 감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과는 상충된다.

②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투자자와 상대방 사이에 투자의 대상인 사업의 내용과 투자금의 사용처, 사업의 운영 및 수익금의 배분 방법, 투자약정의 존속기간 등에 관해 약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③ 원고는 F이 투자한 G의 사업이 ‘소송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투자수익금 회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약정서에 ‘G은 본 투자금을 변호사비용과 회사경비로 사용한다.’는 기재도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대여금 사용처에 관한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G이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F도 G과 소외 회사가 수행한 사업의 내용이나 성패보다는 G에게 교부한 금원의 원리금 반환 보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약정서와 이 사건 제1약정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작성일자도 같다. 여기에 작성경위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약정서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회사 및 C을 채무자로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집행권원(이 사건 공정증서)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제2약정은 이 사건 제1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약정과 별개로 성립하는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어떠한 투자약정이라 할 수 없다.

⑤ F은 G의 사업 진행에 관하여 자금을 교부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았다.

⑥ G은 F에게 이 사건 제1약정서에 기재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1) 앞서 인정된 G과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21. 4. 26.경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G은 F에게 대여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4. 26.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한편, 원고도 G이 2021. 12. 16. 이 사건 제1, 2약정서 기재 채무 중 50,00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대여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2021. 4. 26.부터 2021. 12. 16.까지의 이자는 $6,180,821\text{원}(= 40,000,000\text{원} \times 24\% \times 235\text{일}/365\text{일}, \text{원 미만 버림})$ 이므로, G이 F에게 변제일 기준 차용원리금 46,180,821원을 초과한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G의 F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G의 F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2약정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소외 회사와 C의 F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C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1) 청구취지에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해하여 기재한다.